

『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립도서관의 행정기구 명칭 변경으로 조례 상 문구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조항의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, 개관을 앞둔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조항 신설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
- 구미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 신설
- 작은도서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
-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관련 안내문 추가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반영
- 부속 시설(냉·난방비 및 빔 프로젝터) 사용료 신설 및 조정

4. 참고사항

- 「도서관법」 제2조 및 제30조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7조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립도서관 명칭과 위치에 관한조항을 신설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, 작은도서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1조의2에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이 「도서관법」으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수정하고, 제1조의3에 구미시립도서관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- 제25조, 제26조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관리,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

○ 검토결과

-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맞춰 구미시립도서관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 서식과 조항을 변경하고,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코자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활성화 및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됨.